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87호)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64호)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976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1.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487호)	1
2.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564호)	3
3.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976호)	4
II. 주요 내용별 검토	6
1.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산정기준 변경 및 일몰규정 삭제 ...	6

I. 개요

1.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48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장종태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8. 1.
- (3) 회 부 일 : 2024. 8.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7년 말까지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었음. 이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예상한 적자전환 시점인 2026년보다 약 2년 정도 빠른 것임.

이에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일몰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08조의 2제1항 등).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4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2.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56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8. 5.
- (3) 회 부 일 : 2024. 8.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2027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 지원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국고 지원 종료로 인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준비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고 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연례적으로 과소 추계하고 있는 바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하여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편성 시 보험료 추계방법 및 과소추계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제1항 등).

3.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97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8. 20.
- (3) 회 부 일 : 2024. 8.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여야 하고, 해당 규정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음.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그 재원은 국고지원이 아닌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한 바, 예상 수입액을 과소추계할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고 지원에 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8조

의2제1항 및 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산정기준 변경 및 일몰규정 삭제

가. 개정안의 내용

□ 3건의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액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고 지원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는 국고지원 관련 일몰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국고 지원 산정기준 관련, 3건의 개정안 모두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아닌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것은 동일한데, 소병훈의원안은 현행과 같은 100분의 14이고, 장종태의원안과 남인순의원안은 100분의 17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장종태의원안	남인순의원안	소병훈의원안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부담) ①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	-----	-----
예산의 범위	전전년도 결산	전전년도 보험	전전년도 보험
서 해당 연도	상 보험료 수	료 수입액의 1	료 수입액---
보험료 예상	입액의 100분	00분의 17에	-----
수입액의 100	의 17에 해당	해당하는----	-----

<u>분의 14에 상</u> <u>당하는 금액을</u> <u>국고에서 공단</u> <u>에 지원한다.</u> ② (생 략) ③ 공단은 제1 항에 따라 <u>지</u> <u>원된</u>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 다. 1. ~ 3. (생 략) ④ (생 략) 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u>제2조(유효기간)</u> <u>제108조의2의</u> <u>개정규정은 20</u> <u>27년 12월 31</u> <u>일까지 효력을</u> <u>가진다.</u>	<u>하는</u>----- ----- ----- -----. ② ~ ④ (현 행과 같음) 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u><삭 제></u>	<u>-부담한다.</u> ----- ----- -----. ② (현행과 같 음) ③ ----- -----<u>국</u> <u>가가 부담한</u>--- ----- ----- -----. 1. ~ 3. (현행 과 같음) ④ (현행과 같 음) 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u><삭 제></u>	----- ----- -----. ② ~ ④ (현 행과 같음) 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u><삭 제></u>
---	--	--	--

※ 시행일 : (장종태의원안·남인순의원안·소병훈의원안) 2025년 1월 1일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08조의2제1항은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는 동 지원규정의 유효기간을 2027. 12. 31.까지로 규정하고 두고 있음.¹⁾²⁾

- 현행법 제108조의2제3항은 국고지원금의 사용 용도로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②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③ 건강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실제 국고지원은 보험료 수입액 대비 9.7~11.3%에 그치고 있어 법정지원 기준에 비하여 연례적으로 과소 지원되고 있으며,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건강보험재정에 지원된 금액은 9조 1,494억원으로, 보험료수입액의 11.2% 수준에 불과하였음.

1)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부칙 <법률 제19445호, 2023. 6. 13.>

제2조(유효기간)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참고로 현행법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 및 사용자가 내는 보험료와 국고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국고 일반회계 지원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분은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6619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라 담배부담금 수입액의 65%를 한도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현황 >

(단위: 억원)

연도	보험료수입		지원액(B)	지원율 (C=B/A)	실제 수입액 14% 대비 미달 비율(14%-C)
	예상	실제(A)			
2018년	533,209	536,415	52,001	9.7%	4.3%p
2019년	578,154	587,428	59,721	10.2%	3.8%p
2020년	639,260	624,849	73,482	11.8%	2.2%p
2021년	664,901	692,270	76,554	11.1%	2.9%p
2022년	727,540	765,538	86,843	11.3%	2.7%p
2023년	761,822	815,180	91,494	11.2%	2.8%p

자료: 보건복지부

□ 이와 같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과소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① 확정된 보험료수입액이 아닌 해당 연도의 예상 보험료수입액을 기준으로 국고 지원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현행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 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고,

국회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국고지원금 과소편성과 지원 기준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여 오고 있는 상황임.³⁾

□ 또한,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현행 지원방식이 한시적으로 규정된 이후 일몰기한의 도래에 따라 4차례(2011년, 2016년, 2017년, 2023년) 법률 개정을 통해 유효기한이 연장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안정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3) 제417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4. 8. 21.

- 참고로 2022년말 일몰기한 도래 및 법률 미개정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관련 법적근거의 공백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이후 2023년 6월 유효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하반기에 들어서야 정부지원금 약 11조원이 교부된 바 있음.⁴⁾

< 건강보험재정 국가 지원 규정 유효기간 설정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현황 >

개정일자	관련 내용
2006.12.30	- 「국민건강보험법」에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07.1.1~'11.12.31)으로 한정
2011.12.31	- 국고 지원기간을 5년 연장(~'16.12.31)
2016.2.3	- 국고 지원기간을 1년 연장(~'17.12.31)
2017.4.18	- 국고 지원기간을 5년 연장(~'22.12.31)
2023.6.13	- 국고 지원기간을 5년 연장(~'27.12.31)

□ 개정안은 건강보험 국가 지원금이 법정기준에 비하여 연례적으로 과소지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해당 조항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

4)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는 지원 기준을 확정된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문언상 재정당국의 재량 여지를 줄이거나, 또는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취지로 9건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재정지원 근거를 보완하거나 유효기간 규정을 폐지하여 상시화하자는 의견과, 현재 규정을 그대로 두고 유효기간만을 연장하자는 의견 등의 불일치가 있어 일몰 종료 시(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그 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견을 조정하여 2023년 3월 23일 일몰을 5년 연장하는 취지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음.

□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는 안전장치로서 건강보험재정은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으나, 향후 고령화 심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지출 증대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을 예상수입액이 아닌 전전년도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일몰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국민건강보험 재정전망>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수입	988,955	1,045,611	1,115,354	1,183,196	1,252,201
총 지출	962,553	1,040,978	1,118,426	1,191,091	1,268,037
당기수지	26,402	4,633	△3,072	△7,895	△15,836
준비금	306,379	311,012	307,940	300,045	284,209
(지급가능월수)	(3.8개월)	(3.6개월)	(3.3개월)	(3.0개월)	(2.7개월)

자료 :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각각의 개정안에 따라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지원기준을 변경할 경우 향후 5년(2025년~2029년)간 총 39조 2,846억원 ~ 44조 7,258억원(연평균 7조 8,560억원 ~ 8조 9,452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⁵⁾, 구체적인 지원 비율 등에 대해서는

5) 국회예산정책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참고

국가 재정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장종태의원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국고 지원비율을 14%에서 17%로 상향하면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489호)에서 건강증진기금 지원비율을 6%에서 3%로 하향하고 있는데, 이는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을 합친 지원비율을 20%로 유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시행일을 2025. 1. 1.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고 지원비율을 변경할 경우 어느 회계연도 예산 편성시부터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부칙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지원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2건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⁶⁾

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48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977호)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

(단위: 억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현행제도에 따른 재정소요(A)	105,632	114,095	123,252	-	-	342,979	68,596
장종태·남인순 의원안(B)	138,581	144,645	156,152	168,662	182,199	790,237	158,047
추가재정소요 (B-A)	32,948	30,550	32,900	168,662	182,199	447,258	89,452
소병훈의원안(C)	114,125	138,294	149,084	160,814	173,507	735,824	147,165
추가재정소요 (C-A)	8,493	24,199	25,832	160,814	173,507	392,846	78,569

- 주: 1. 현행법에 따라 해당 연도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산정된 국고지원금(A)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보험료 수입 전망치와 최근 3년(2021~2023년) 평균 실국고지원율(11.5%)을 적용
 2. 개정안에 따라 산정된 국고지원금(B, C)는 전전년도 결산상 건강보험 수입(2025년은 2023년 결산상 수입, 2026년 이후는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기준으로 산정
 3. 동 추계는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2.06%(최근 3년 평균)씩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로서, 건강보험료를 인상률이 달라질 경우 추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관계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나 현행 규정상 국고 지원의 산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불확실성·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는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및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국고 지원금의 산정기준 명확화 및 일몰규정 삭제가

필요하다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함.

- 다만, 단기보험의 특성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국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 국고지원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

- 개정안은 2년의 시차를 두고 정산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나, 국가 회계가 아닌 건강보험에 국고로 정산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어려움.⁷⁾
-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성격상 보험료 수입과 보험급여 지출간 균형을 이루어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2000년 의약분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강보험 수지를 보완하기 위해 2007년부터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일몰규정 삭제는 부적절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일몰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함. 향후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지출 확대가 예상되므로 개정안에 따라 지원기준 조정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7)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회계 중 전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교부되는 교부금 및 국가기금으로 운영하고 정부가 고용주인 공무원·군인연금에 한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대한의사협회

- 현재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법정지원율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적립금 고갈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건강보험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국고지원의 안정적 지원과 양적 확대가 필요함. 개정안에 따를 경우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100분의 20 수준으로 지원을 상향이 필요함.

□ 대한한 의사협회

- 고령화의 심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 지출 증대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현행 법률의 불명확한 규정과 한시적 지원 부칙 삭제 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안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503